

고등교육법 시행령

<목 차>

1.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김수진
	담당부서 (과)	대학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송근현		연락처	044-203-6911
	과장	김태경		이메일	sandle73@mail. go.kr

2026. 09. 0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송 근 현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14											
	3.위임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04~2026.10.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개정으로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시행령) 정비가 불가피 － 이미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타 보건의료 분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평가인증 미신청 또는 거부 시 시정명령,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도 적용 필요 － 약사법에 따라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자에게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학이 평가·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 － 약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부실 교육과정 운영 대학에 대해 국가가 직접 행정처분 수단을 행사하여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해야할 공익적 책무가 있음											
	7.규제내용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 의무화 대상을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뿐만 아니라 약학 과정운영 학교도 평가·인증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시행령 [별표4]에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대 학</td><td>약학대학 37개교</td></tr><tr><td>이해관계자</td><td>학생, 수험생 등 국민</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 학	약학대학 37개교	이해관계자	학생, 수험생 등 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 학	약학대학 37개교											
이해관계자	학생, 수험생 등 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도입 목표) 약학과정의 평가·인증 의무화로 법적 실효성 및 강제력을 확보하고, 의료계열과 동일하게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확립 (기대효과) 약학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 학생·수험생의 권익 보호(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상실 피해 사전 차단) 및 검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학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건강권 증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table><tr><td></td><td>비 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table>		비 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비 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약학이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것으로 별도 추가비용은 없으나, 행정처분으로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1차위 반),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2차 위반) 등 대학의 불이익 발생,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비용 발생 예상	타 보건의료계열과 의 규제 공정성이 확보되어 국가 자격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도 상승 대학은 규제 준수를 통해 교육의 질을 공신력있게 인정 받아 우수학생 확보, 학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대학의 대외적 평판 유지	평가·인증을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교육의 질을 인정받게 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비용 없이 편익만 존재		
			주요내용	대학이 평가·인증 절차 불이행시 불이익 및 행정 마찰 비용 등에 비해, 국민 건강권 보호, 약사 국 가 자격의 질적 담보, 타 보건의료 분야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편익이 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15.규제정비 계획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14 관련 [별표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가~다. (생 략)	(생 략)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 · 치 의 학 · 한 의 학 또는 간호 학 전공 학과등 또 는 전문대 학원 입학 정 원 의 100퍼센 트 범위에 서 모집정 지	해당 의학 · 치 의 학 · 한 의 학 또는 간호 학 전공 학과등 또 는 전문대 학원 폐지	라 ----- ----- ----- ----- --(대통령령 제 0 0 0 0 0 호 ----- ----- ----- ----- -----) ----- ----- -----	--- 의학 · 치 의 학 · 한 의 학 · 간 호 학 또는 약학 ----- ----- ----- ----- --	--- 의학 · 치 의 학 · 한 의 학 · 간 호 학 또는 약학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 정비 필요

* [법률 제21654호, 2026. 5.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1. 20.]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모집정지,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평가·인증을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의 공정성	

	확보, 학생·수험생의 권익 보호 및 대학의 교육의 질 보장 유도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고등교육법('26.5.) 개정 과정에서 협의	없음	정상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평가인증 의무화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시 제재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의·치·한의학·간호 등 타 보건의료계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의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평가·인증 이행을 점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약학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
- 대학이 평가·인증 미이행시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상실'이라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정부가 예방적 규제수단인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대학의 운영을 차단하고 수험생·국민 보호할 수 있음

3. 규제목표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약학과정 의무 평가·인증 제도가 대학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구체적인 법적 강제 수단 확보
-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결되는 약학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과 지속적인 교육의 질 확보
- 이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타 보건의료계열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으로 통일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 구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약학과정도 평가·인증 의무화 대상이 됨에 따라 부실한 약학교육을 받은 약사의 배출을 막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임.
-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수단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의료과정과의 동일한 제재를 적용받음으로써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함
-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 행정처분 기준으로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부실 교육과정 운영 방지 및 교육의 질 유지에 기여
- 규제로 인해 대학이 입는 불이익(평가 불이행 시 모집정지 등의 제재 위험)은 학사 운영상의 제약이나 일시적 경영상 타격인 반면,
-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수험생의 학습권 보호, 국시 응시 자격 상실 방지, 국민건강권 증진)이 더 중요할 것임
-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 규제는 약학교육의 질적 담보와 보건의료 인력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약학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평가·인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제재 수단으로 대학 입장에서 감수할 실익이 없으므로, 평가·인증 절차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하에 평가·인증을 받고 있고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결됨에 따라, 약학과정에도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평가·인증 절차 준수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교육부는 이미 타 의료계열의 평가·인증 미이행 대학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해 왔고,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 실시 결과를 통보받으므로 행정처분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수반내용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의학계열 평가·인증 의무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16.6.~시행)
-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37교)은 교육부가 지정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음('22.8.~)
- **(약사국시와 평가인증 연계)**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25.4.8.~시행)
- **(약학과정 평가·인증 의무)**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6.11.20.~)

2. 향후 평가계획

- 인정기관과 함께 규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법 시행 후 ('26.11.20) 지속 모니터링

3. 규제 정비계획

-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으로 별도 정비계획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14 관련 [별표4]	해당없음	26년 11월

4. 종합결론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5.5.19.)에 따라, 법 시행일('26.11.20) 이전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약학교육운영학교가 평가·인증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통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약학인 양성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유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대학이 평가·인증 절차 불이행시 불이익 및 행정 마찰 비용 등에 비해, 국민 건강권 보호, 약사 국가 자격의 질적 담보, 타 보건의료 분야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편익이 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①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
활동제목	평가·인증 미이행시 행정처분 실시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규제개요)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모집정지,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적용 ○ (피규제 대상) 37개 약학과정 운영 대학 ○ (개정안에 따른 비용부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별도 비용부담은 없으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등 불이익으로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 등의 비용 발생 예상 ○ (비용 단가)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규제 비용) 개정안에 따른 부담의 단가를 화폐화하기 어려워 정성분석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수험생, 학부모 등 일반 국민
활동제목	평가·인증 미이행시 행정처분 실시
편익항목	약사 국가자격의 질 담보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개정안에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행정처분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약학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역량있는 약사 국가자격을 가진 학생을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등 사회적 편익에 기여하는 바가 큼